

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알림

국내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,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,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2년 12월 23일(금) 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됨을 알려 드립니다.

- 공고기간 : 2022. 12. 7. ~ 2022. 12. 23.
- 처리일자 : 2022. 12. 24. 이후
- 공고대상 : 붙임 참고

2022년 12월 7일

서대문구청장

